

번호: 60/2012/TT-BTC

2012. 4. 12, 하노이

※ 본 한국어 번역문은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에 관한 관한 개략적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며, 해당 규정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베트남어 원문을 기초로 하시기 바랍니다.  
- 호치민총영사관 변동욱 영사-

## 시행규칙

###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또는 수익이 발생하는 외국 법인, 개인에 적용되는 납세의무의 이행에 관한 안내

2008. 6. 3 일자 부가가치세법 12/2008/NĐ-CP 호; 부가가치세법중 일부조항에 대하여 세부 안내하는 2008. 12. 8 일자 123/2008/NĐ-CP 호 정부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중 일부조항에 대하여 세부 안내하는 2008. 12. 8 일자 121/2011/NĐ-CP 123/2008/NĐ-CP 호 정부 시행령의 일부를 수정, 보충하는 2011. 12. 27 일자 121/2011/NĐ-CP 호 정부 시행령에 근거;

2008. 6. 3 일자 14/2008/QH12 호 기업소득세법; 기업소득세법중 일부조항에 대하여 세부 시행안내하는 2008. 12. 11 일자 124/2008/NĐ-CP 호 시행령; 기업소득세법중 일부조항에 대하여 세부 시행안내하는 2008. 12. 11 일자 124/2008/NĐ-CP 호 시행령을 수정, 보충하는 2011. 12. 27 일자 122/2011/NĐ-CP 호 시행령에 근거;

2006. 11. 29 일자 78/2006/QH11 호 조세관리법에 근거;

2008. 11. 27 일자 118/2008/NĐ-CP 호 재무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에 관한 정부 시행령에 근거;

국제총국 총국장의 건의를 검토하여;

재무부는 다음과 같이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또는 발생하는 수익이 있는 외국 법인, 개인에 적용되는 납세의무의 이행에 관한 안내 시행규칙을 발행한다:

## 제 1 장

### 일반 규정

#### 제 1 조. 적용 대상

이 시행규칙의 안내는 다음 대상에 적용된다 (이 시행규칙 제 1 장 제 4 조에 해당하는 대상은 제외된다):

1. 계약자간 계약상 내용의 일부를 이행하기 위하여 베트남 법인, 개인과 외국계약자간, 외국하청계약자와 외국계약자간의 계약, 동의 또는 약속을 기초로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또는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는, 베트남에 상주 사무소가 있는 또는 베트남에 상주 사무소가 없는 사업하는 외국 법인; 베트남에 거주하는 또는 거주하지 않는 사업하는 외국 개인 (이하 모두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라 한다);
2. 외국 법인, 개인과 베트남에 있는 기업간에 서명된 계약을 기초로 베트남내에서 현지 수출입 형식에 따라 베트남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그리고 수익 발생이 있는, 또는 DDP, DAT, DAP (국제무역용어 - 인코텀즈, Incoterms)의 거래조건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는 외국 법인, 개인 (외국 법인, 개인을 위해 가공하고 재수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예시 1:

- **Case 1:** 외국에 있는 기업 X는 베트남 기업 A로부터 직물을 구입하는 계약에 서명하고, 동시에 기업 A로 하여금 베트남 기업 B에 물품을 인도 (법률의 규정에 따른 현지 수출입 형식으로) 하도록 지정하였다. 기업 X는 기업 X와 기업 B 사이에 서명된 계약을 기초로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수익이 있다 (기업 X는 기업 B에 직물을 판매하였다).

이 Case에서, 기업 X는 이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고, 기업 B는 이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기업 X를 대신하여 신고, 공제 및 납세의 책임이 있다.

- **Case 2:** 외국에 있는 기업 Y는 베트남 기업 C와 직물을 임가공 하는 계약에 서명하고, 동시에 기업 C로 하여금 베트남 기업 D에 물품을 인도 (법률의 규정에 따른 현지 수출입 형식으로) 하도록 지정하였다. 기업 Y는 기업 Y와 기업 D 사이에 서명된 계약을 기초로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수익이 있다 (기업 Y는 기업 D에 물품을 판매하였다).

이 Case에서, 기업 Y는 이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고, 기업 D는 이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기업 Y를 대신하여 신고, 공제 및 납세의 책임이 있다.

- **Case 3:** 외국에 있는 기업 Z는 베트남 기업 E와 직물을 임가공 또는 구매 하는 계약 (기업 Z는 기업 E가 임가공 할 수 있도록 원자재를 공급한다)에 서명하고, 기업 E로 하여금 베트남 기업 G가 계속 임가공 할 수 있도록 그에 물품을 인도 (법률의 규정에 따른 현지 수출입 임가공 형식으로) 할 것을 지정하였다. 임가공이 종료된 후, 기업 G는 임가공 계약에 따라 기업 Z에 물품을 재수출 하고, 기업 Z는 임가공료를 청산하여야 한다.

이 Case의 경우, 기업 Z는 이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 제 2 조. 납세의무자

1. 육지영토, 海島, 내수면, 영해 및 그 상공, 영해 밖 해역을 포함하고, 베트남이 베트남 법률 및 국제법에 따라 주권, 주권적 권리, 재판권을 행사하는 해저, 해저 토양을 포함하는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또는 베트남에서 수익이 있는, 제 2 장 제 2 목 제 8 조에 규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 그 사업은 베트남 법인, 개인과, 하청계약자 계약서를 기초로 베트남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타 외국 법인, 개인과 계약자 계약을 기초로 진행된다.

베트남에 상주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또는 베트남 거주자인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인 지의 확정은 기업소득세법, 개인소득세법 및 각 시행안내 문건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기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상주 사무소, 거주자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협정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계약자 계약 또는 하청계약자 계약을 기초로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불한, 물품 제조, 구매서비스 경영, 물품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법인, 베트남 법률에 따라 등록되고 운영되는 법인, 기타 법인, 그리고 개인 (이하 모두 베트남측 당사자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기업법, 국영기업법 (이하 기업법이라 한다), 베트남 외국인투자법 (이하 투자법이라 한다) 및 합작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Business 법인;
- 정치조직, 정치-사회 조직, 사회조직, 사회-직능 조직, 武裝단위, 사업조직, 기타 조직의 경제조직;
- 석유가스법에 따라 운영하는 석유가스 계약자;
- 베트남에서 활동 허가된 외국회사 지점;
- 외국법인 또는 베트남에서 활동 허가된 외국법인의 대표;
- 직접, 또는 협력 방식으로 베트남 출발, 도착 운송권이 있는 항공사의 베트남내 대표 사무소, 대리점;
- 외국해운사의 해운서비스운영 법인, 개인; 외국 포워딩·창고 회사, 운송사의 베트남내 대리점;
- 증권투자펀드 또는 외국법인이 증권투자계좌를 개설한 증권사, 증권 발행회사, 펀드 관리회사, 은행;
- 베트남에 소재하는 기타 법인;
- 베트남에서 제조 사업하는 개인.

이 시행규칙 제 1 장 제 2 조 제 2 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에게 지급하기에 앞서 이 시행규칙 제 2 장 제 3 목에서 안내된 부가가치세 (GTGT), 기업소득세 (TNDN) 세액을 공제할 책임이 있다.

### 제 3 조. 적용 稅種

1. Business 법인인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는 이 시행규칙의 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GTGT), 기업소득세(TNDN)의 의무를 이행한다.
2. 사업하는 외국 개인인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는 이 시행규칙에 따른 부가가치세 (GTGT), 개인소득세(TNCN)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소득세의 의무를 이행한다.
3. 각종 세, 수수료, 부담금에 대해서는,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가 현행 세, 수수료 및 부담금에 관한 각 법률 문건에 따라 이행한다.

### 제 4 조. 비적용 대상

이 시행규칙의 안내는 다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1. 투자법, 석유가스법, 각 신용기관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외국 법인, 개인.

2.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베트남내 수행 서비스가 없이 베트남 법인, 개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외국 법인, 개인:

- 외국 국경관문에서의 물품 인도; 판매자가 외국 국경관문에서의 물품 수출과 물품인도와 관련된 모든 책임, 비용, 위험을 부담한다; 구매자가 외국 국경관문에서부터 베트남으로 되돌아 오기까지 물품 수령, 물품 운송과 관련된 모든 책임, 비용, 위험을 부담한다.
- 베트남내 국경관문에서의 물품 인도: 판매자가 베트남내 국경관문에서의 물품 인도장소까지의 물품관련 모든 책임, 비용, 위험을 부담한다; 구매자가 베트남내 국경관문으로부터 물품 수령, 물품 운송과 관련된 모든 책임, 비용, 위험을 부담한다.

3. 베트남 영역 밖에서 공급되고 소비되는 서비스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외국 법인, 개인.

예시 2:

홍콩 기업 H는 홍콩 항에서 베트남 기업 A의 국제운송 선단을 위해 물품 정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 A는 기업 H에 홍콩 항에서의 물품 정리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 Case의 경우, 홍콩 항에서의 물품 정리 서비스는 홍콩에서 공급되고 소비되는 서비스이므로 베트남에서 세를 부담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예시 3:

외국 법인이 베트남 기업 A를 위해 기업 A가 GDR (Global Depositary Receipt - 글로벌 예탁증서) 및 국제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각 나라에서 관련전문 서비스, 채권 관리 및 발행, 법률자문, 예탁 대리, 로드 쇼 (브랜드 홍보활동의 하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경우, 외국 법인에 의한 이 서비스는 이 시행규칙의 적용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4. 베트남 법인, 개인을 위해 외국에서 수행되는 아래 서비스를 공급하는 외국 법인, 개인:

- 제공하는 대체 원료, 설비를 포함하거나 아니하거나 운송수단 (항공기, 항공기 엔진, 항공기 부품, 선박), 기계, 설비 (해저 케이블, 전송설비를 포함한다)의 수리;
- 광고, 마케팅 (인터넷상의 광고, 마케팅을 제외한다);

예시 4:

기업이 싱가포르 시장에서 상품 광고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법인과 계약을 맺은 경우, 싱가포르 법인의 이 광고서비스는 이 시행규칙의 대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싱가포르 법인이 인터넷으로 베트남 시장에서 소비할 상품 광고를 실행하는 경우, 그 광고 서비스로부터의 수익은 이 시행규칙의 적용대상에 속한다.

- 투자 및 무역 촉진;
- 중개: 외국에서의 물품 판매, 서비스 공급;

예시 5:

베트남 기업이 태국 또는 세계 시장에서 베트남 기업의 상품 판매를 위하여 태국 기업과 중개서비스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태국 기업의 이 중개서비스는 이 시행규칙의 적용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베트남 기업이 베트남 기업의 부동산을 베트남내 이전

중개서비스를 하도록 태국 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 중개서비스는 이 시행규칙의 적용대상에 속한다.

- 교육훈련 (온라인 교육훈련을 제외한다);

예시 6:

베트남 기업 A는 베트남 직원이 싱가포르로 가서 싱가포르 대학 B에서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 싱가포르 대학 B와의 계약을 맺었다면, 대학 B의 교육훈련 서비스는 이 시행규칙의 적용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베트남 기업 A가 대학 B와 온라인학습 형식으로 베트남에서 베트남 직원들에게 교육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대학 B의 온라인 교육훈련 서비스는 이 시행규칙의 적용대상에 속한다.

- 베트남 영역밖에서 이루어지는 베트남과 외국간의 국제 우편, 통신 서비스의 분할 요금 (지불된 비용); 외국의 전송선로 및 위성통신 대역 용역서비스는 우편법, 통신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 5 조. 시행규칙 내에서 사용되는 개념

이 시행규칙에서 아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1. "**계약자 계약(Contractor Contract)**"는 외국계약자와 베트남측 당사자 간의 계약, 동의 또는 약속이다.
2. "**하청계약자 계약(Sub-Contractor Contract)**"는 하청계약자와 외국계약자간의 계약, 동의 또는 약속이다.

하청계약자는 외국 하청계약자와 베트남 하청계약자를 포함한다.

2. 베트남 영토는 육지영토, 海島, 내수면, 영해 및 그 상공, 영해 밖 해역을 포함하고, 베트남이 베트남 법률 및 국제법에 따라 주권, 주권적 권리, 재판권을 행사하는 해저, 해저 토양을 포함한다.

## 제 2 장

### 세액계산의 기초와 방법

#### 제 1 목. 부가가치세 (GTGT) 납부대상 및 기업소득세 (TNDN) 납부대상 수익

## 제 6 조. 부가가치세 (GTGT) 납부대상

1.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가 계약자 계약, 하청계약자 계약을 기초로 공급하여 베트남에서의 생산, 사업, 소비를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 또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속하는 물품관련 서비스 (이 시행규칙 제 1 장 제 4 조에 규정되는 물품, 서비스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에 의해서 베트남 내에서 공급되고 베트남에서 소비되는 서비스, 또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속하는 물품관련 서비스;
  -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에 의해서 베트남 외에서 공급되고 베트남에서 소비되는 서비스, 부가가치세 부과대사에 속하는 물품관련 서비스
2. 아래 형식의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물품: 물품인도 장소가 베트남 영토내일 것; 또는 설치, 시운전, 보증수리, 유지관리, 교체, 기타 물품공급관련 서비스 등과 같이 베트남내에서 진행되는 서비스에 수반되는 물품공급으로서, 이러한 상기 언급된 각 서비스 공급의 경우 물품공급계약의 가격에 포함되었든 아니되었든 모두 포함하며, 물품가격에 대해서는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고, 서비스가격에 대해서는 이 시행규칙의 안내에 따라 해당비율 만큼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대상으로 한다. 동반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금액을 분리할 수 없는 계약일 경우 (서비스가 비용 면제 형태로 동반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는 계약 전체에 대하여 일괄해서 계산된다.

예시 7:

베트남 기업 A는 외국 기업 B와 시멘트공장 프로젝트용 기계설비 라인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에 서명하였다. 총 계약금액은 100 백만 USD이며, 여기에는 80 백만 USD의 기계설비 금액 (그 가운데 세율 1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설비가 있다), 설치안내, 설치감리, 보증수리, 유지관리 등 서비스 금액은 20 백만 USD이다.

기계설비 라인 수입시, 기업 A는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인 수입설비 금액에 대한 수입단계 부가가치세 납부를 이행할 수입자이다.

기업 A와 체결한 계약 금액에 대한 기업 B의 부가가치세 의무 확정은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는 서비스 금액 (20 백만 USD)에 대하여 산출되며, 수입 기계설비 라인 금액에 대해서는 산출되지 않는다.
- 계약이 기계설비 라인 금액과 서비스 금액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 전부 (100 백만 USD)에 대해서 산출된다.

## 제 7 조. 기업소득세 (TNDN) 납부대상 수익

1. 계약자 계약, 하청계약자 계약 (이 시행규칙 제 1 장 제 4 조에 규정된 물품 및 서비스를 제외한다)을 기초로 하여 베트남에서 서비스, 물품관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의 수익.
2. 물품이 다음 형식으로 공급되는 경우: 물품인도 장소가 베트남 영토내일 것; 또는 설치, 시운전, 보증수리, 유지관리, 교체, 기타 물품공급관련 각종 서비스 등과 같이 베트남내에서 진행되는 서비스 (서비스가 비용 면제 형태로 동반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반되는 물품공급으로서, 이러한 상기 언급된 각 서비스 공급의 경우 물품공급계약의 가격에 포함되었든 아니되었든 모두 포함하며,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의 기업소득세 부담대상 수익은 물품 및 서비스 금액 전부이다.

예시 8:

베트남 기업 A는 외국 기업 B와 시멘트공장 프로젝트를 위해 기계설비 라인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총 계약금액은 100 백만 USD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이고, 기계설비

금액은 80 백만 USD 와, 설치안내, 설치감리, 보증수리, 유지관리 등 서비스 금액은 20 백만 USD 를 포함한다.

계약금액에 대한 기업 B 의 기업소득세 의무는 다음과 같이 확정된다:

- 기업소득세는 규정에 따른 기업소득세 각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 기계설비 라인 금액 (80 백만 USD)과 서비스 금액 (20 백만 USD)로 나누어 별도로 산출된다.
- 계약이 기계설비 라인 금액과 서비스 금액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기업소득세는 총 계약금액 (100 백만 USD)에 대해서 규정에 따른 기업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3.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의 베트남내 발생 수익은 계약자계약, 하청계약자 계약을 기초로 어떤 형식이든 불문하고 가득한 수익 (이 시행규칙 제 1 장 제 4 조에서 규정하는 물품, 서비스 공급의 경우를 제외한다)이며,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의 사업활동 진행 장소와 관계 없다.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대상 수익은 일부 경우에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소유권, 재산사용권 양도 수익.
- 사용권, 지적소유권 이전 및 기술 이전 (사용권, 저작권 이전 및 작품소유주 권; 공업소유권; 기술이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어떤 형식이든지를 불문하고 지급되는 로열티 수익.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민사법, 기술이전법 및 그 시행안내 문건에 규정된 “저작권, 작품소유주 권”, “공업소유권”, “기술이전”.
- 자산의 양도 및 정리 수익.
- 대출금 이자 수익: 그 대출금이 저당으로 보증된 것인지 아닌지, 그 대출자가 차입자의 이자지급으로부터 얻은 것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대출금으로부터의 대출자측 수익; 예금이자 수익 (외국인 개인의 예금이자, 베트남 주재 외교 대표기관 및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 대표기관의 베트남내 활동유지를 위한 예금에서 발생하는 예금이자)으로서, 예금이자에 부가되는 (있다면) 각종 보너스 금액이 포함됨; 각 계약의 규정에 따른 지급 지연이자로부터의 수익; 채권 이자, 채권가격 할인으로부터의 수익 (면세대상 채권 제외); 예탁증서 이자 수익.

대출금 이자는 베트남측 당사자가 계약의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 금액을 포함한다.

- 증권 양도 수익.
- 계약위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벌금, 보상금.
-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수익.

## 제 2 목. 공제방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GTGT) 납부,

납세대상 수익 확정을 위한 매출/비용신고를 기초로 한 기업소득세(TNDN) 납부

(이하에서 공제방법, 신고방법이라고 한다)

## 제 8 조. 적용대상 및 적용조건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는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이 시행규칙 제 2 장 제 2 목의 안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

- (i) 베트남에 상주 사무소를 가지고 있거나, 베트남 거주자;
- (ii) 계약자계약, 하청계약자 계약에 따른 베트남내 사업기간이 계약자계약, 하청계약자 계약이 효력이 있는 날을 포함하는 날로부터 183 일 또는 그 이상일 것;
- (iii) 베트남 회계제도의 적용.

## 제 9 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및 각 시행안내 문건의 규정에 따라 이행.

## 제 10 조. 기업소득세

기업소득세법 및 시행안내 문건의 규정에 따라 이행.

### 제 3 목. 부가가치 직접계산법에 의한 납부,

#### 매출액 비율에 의한 기업소득세 납부

(이하에서 고정비율 방법이라 한다)

## 제 11 조. 적용대상 및 적용조건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가 이 시행규칙 제 2 장 제 2 목 제 8 조에 제기된 조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해,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가 이 시행규칙 제 2 장 제 3 목 제 12 조, 제 13 조의 안내에 따라 납세하고자 하는 경우, 베트남측 당사자가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를 대신하여 납세한다.

## 제 12 조. 부가가치세

세액계산의 기초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서비스, 물품관련 서비스의 부가가치와 부가가치세 세율이다.

$$\text{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 \text{부가가치 액} \times \text{부가가치세 세율}$$

### 1.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서비스, 물품관련 서비스의 부가가치는, 부가가치세 계산대상 매출액과 그 매출에 대하여 적용할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a) 부가가치세 계산대상 매출액:

부가가치세 계산대상 매출액은,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가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에 속하는 서비스, 물품관련 서비스의 공급으로 받을 수 있는 매출액 전부이며, 납부해야 될 세액을 아직 공제하지 않았으며, (있다면)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를 대신하여 베트남측 당사자가 지급한 각종 비용을 포함한다.

b) 구체적 경우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계산대상 매출액의 결정사례:

- 계약자계약, 하청계약자 계약에서 동의한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수령한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의 매출일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대상 매출액은 다음 공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매출액으로 환산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begin{array}{l} \text{부가가치세} \\ \text{계산대상} \\ \text{매출액} \end{array} = \frac{\text{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출액}}{1 - \text{매출대비 부가가치율 (\%)} \times \text{부가가치세 세율}}$$

예시 9: 외국계약자 A는 베트남측 당사자를 위해 시멘트공장 Z를 건설하기 위한 총괄관리 서비스를 공급하며, 계약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하지만 기업소득세는 포함하며) 300,000 USD이다. 그 외에, 베트남측 당사자는 외국계약자 A의 관리직원들을 위한 숙소와 사무실을 준비하며,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40,000 USD이다. 계약에 따라, 베트남측 당사자는 외국계약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외국계약자 A의 부가가치세 계산대상 매출액 결정은 다음과 같다:

세 포함 매출액의 결정:

$$\begin{array}{l} \text{부가가치세} \\ \text{계산대상 매출액} \end{array} = \frac{300,000 + 40,000}{(1 - 50\% \times 10\%)} = 357,894.73 \text{ USD}$$

- 외국계약자가 공제, 신고 방법에 따라 세금 납부를 이행할 베트남 하청계약자 또는 외국 하청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외국 하청계약자가 베트남측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자계약에서 규정되는 작업 또는 工種 항목, 그리고 각 베트남 하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가 부분 공정을 시행하는 리스트 또는 계약자계약에 맞게 상응하여 열거된 항목의 세부 금액배분을 위하여 혼합방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외국계약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대상 매출액은 베트남 하청계약자 또는 외국 하청계약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해당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외국계약자가 계약자계약 수행을 위한 원재료 물자, 기계설비, 계약자계약에 따라 외국계약자가 수행하는 공정 항목, 작업에 속하지 않는 내부 소비, 지출 소비 목적의 물품, 서비스 등 구매를 목적으로 베트남에서 각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물품, 서비스 금액은 외국계약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대상 매출액 결정시 제외되지 않는다.

예시 10:

외국계약자 A는 베트남측 당사자와 시멘트공장 건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총가격은 총가격 계약가격 10 백만 USD이다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계약자계약에 따라, 외국계약자 A는 베트남 하청계약자 B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인) 01 백만 USD의 금액으로 (계약자가 베트남측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에 규정된 대로) 설치하는 가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 계약자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시멘트공장

Z 건설과정에서, 외국계약자 A 는 설치 이행 원재료 물자 (벽돌, 시멘트, 모래 …)를 구매하고, 자동차, 기술자용 호텔 같은 각종 물품, 서비스를 구매하며, 사무실용품… 계약이행을 위한 용역도 구매한다.

이 경우, 외국계약자 A 의 부가가치세 계산대상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text{부가가치세 계산대상 매출액} = 10 \text{ 백만 USD} - 1 \text{ 백만 USD} = 9 \text{ 백만 USD}$$

외국계약자 A 의 부가가치세 계산대상 매출액은 각 원재료 물자, 물품, 자동차, 기술자용 호텔비용, 사무실용품 구매, …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지급액을 제외하지 않는다.

- 하청계약자가 고정비율 방법에 따라 세액을 납부 이행하는 외국 하청계약자일 경우, 외국계약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대상 매출액은 베트남측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외국계약자가 받은 매출액 전부이다. 외국 하청계약자는 외국계약자와 체결한 하청계약자 계약의 규정에 따라 외국 하청계약자가 수행할 작업분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 베트남으로부터 외국으로 가는 국제 물류(포워딩), 창고 서비스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는 지를 불문하고)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계산대상 매출액은 외국계약자가 받은 매출액 전부이며, 운송사 (항공, 해운)에 지급해야 하는 국제 운송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베트남으로부터 외국으로 가는 국제운송 서비스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는 지를 불문하고)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계산대상 매출액은 외국계약자가 받은 매출액 전부이다.

예시 11:

외국 기업 A 는 외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 및 베트남으로부터 외국으로 우편소포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 A 의 부가가치세 계산대상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 외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의 운송 서비스 (외국 발송인 또는 베트남내 수취인이 서비스 대금을 지불하는 지를 불문하고)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 + 베트남으로부터 외국으로의 운송 서비스 (베트남내 발송인 또는 외국 수취인이 서비스 대금을 지불하는 지를 불문하고)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계산대상 매출액은 기업 A 가 받은 매출액 전부이다.

## 2. 세 계산대상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 계산비율 (%):

### a) 사업분야별 세 계산대상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 계산비율 (%):

번호	사업 분야	계산대상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 계산비율 (%)
1	서비스 (석유가스 굴착 서비스 제외), 기계설비 대여, 보험	50
2	석유가스 굴착 서비스	70

3	a) 건설 작업에 동반되는 원재료, 또는 기계, 설비가 포함되는 건설, 설치	30
	b) 건설 작업에 동반되는 원재료, 또는 기계, 설비가 포함되지 않는 건설, 설치	50
4	운송, 제조, 기타 사업	30

b) 구체적인 일부 경우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계산대상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 계산비율 (%)의 결정:

- 서로 다른 많은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되지 않는 일부 계약금액이 있는 각 계약자계약, 하청계약자 계약에 있어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 결정 시, 부가가치세 계산대상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 비율의 적용은 계약자계약, 하청계약자계약의 규정에 따라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가 수행하는 모든 사업활동별 각 부가가치세 계산대상 매출액을 근거로 한다. 각각의 사업활동의 가액을 분리할 수 없을 경우, 사업분야에 대하여 최고로 높은 부가가치 비율과 계약금액 전부에 대하여 가장 높은 세율수준을 적용한다.

특히, 건설 작업장에 들어가는 원재료 또는 기계, 설비가 있는 건설, 설치 활동에 대하여는, 세 계산대상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 계산비율은 계약금액 전체에 대한 30%이다.

외국계약자가 원재료, 또는 기계, 설비 계약을 포함하는 작업 또는 공정항목 각 금액부분을 전체적으로 재하청 주기 위해 각 하청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국계약자가 계약자계약에 따라 나머지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만 이행한다면, 부가가치 계산대상 매출액에 부가가치 계산비율 %는 서비스업 부문 (50%)에 대한 것이 적용된다.

예시 12:

외국계약자 A 는 베트남측 당사자와 75 백만 USD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로 발전소 1 개소를 건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액은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 + 사업장에 공급되는 기계, 설비 금액: 50 백만 USD.
- + 기술라인 설계, 기타 설계 금액: 5 백만 USD.
- + 공장 건물, 기타 보조시스템 건설, 설치 금액: 15 백만 USD.
- + 감리, 설치 안내 서비스 금액: 3 백만 USD.
- + 기술 교육훈련, 시운전 금액: 2 백만 USD.

이 경우, 전체 75 백만 USD 계약금액에 대한 적용 부가가치 계산비율 %는 30%이고, 외국계약자 A 의 공급에 의한 각 사업활동에 대하여 분리계산 하지 않는다.

외국계약자 A 가 하청계약자에게 원재료 계약을 포함하는 일부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계약자 A 가 서비스 (감리서비스, 설치 안내 등과 같은 예) 금액의 일부만 수행 한다면, 이 서비스 금액부분에 대한 부가가치 적용비율은 50%이다.

- 설치, 교육훈련, 운전, 시운전 등 안내서비스가 수반되는 기계설비 공급계약에 있어서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세액 결정시 기계설비 금액 및 각종 서비스 금액을 분할할 수 있다면, 계약금액 각 부분별 부가가치 계산비율을 적용한다.

계약 가운데서 기계설비 금액 및 서비스 금액을 각기 분리할 수 없는 경우, 세 계산대상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 적용비율은 30%이다.

예시 13:

베트남 회계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한국의 외국계약자 H는 베트남 기업 B와 설치, 운영, 시운전 서비스가 동반되는 기계라인, 설비 공급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며, 그 금액은 10,000,000 USD이다. 기계 설비부분과 설치, 운영, 시운전 서비스 금액을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계약이라면, 부가가치 적용비율은 30%이다.

- 기계, 설비, 운송수단 임차에 대해서는 임차료 전체가 부가가치세 계산대상 매출액이 된다. 기계, 설비, 운송수단 임차부문 매출액이 운송수단 보험, 유지관리, 등록증명서, 운송수단 운전원, 기계 등과 같이 임대자에게 직접 지불된 비용 및 외국에서 베트남으로 기계설비 운송비용을 포함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계산대상 매출액에는 이들 비용지급을 사실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포함되지 않는다.

### 3. 부가가치세 세율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물품,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은 부가가치세법과 각 시행안내 문건에 규정된 세율이다.

부가가치로부터 직접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대상에 속하는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가 계약자계약, 하청계약자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 (베트남 하청계약자가 수행하는 하청계약에 대해서 모든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 제 13 조. 기업소득세

세액계산의 기초 (Base)는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과 세 계산대상 매출액에 적용할 기업소득세율 (%)이다.

$$\frac{\text{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text{기업소득세}} = \frac{\text{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text{세 계산대상 매출액}} \times \text{적용할 기업소득세율}$$

### 1.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

#### a)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은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령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출액 전체이다.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은 (있다면)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를 대신하여 베트남측 당사자가 지불하는 모든 각 비용지급액을 포함한다.

#### b) 구체적 경우에 있어서의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의 결정사례:

- 계약자계약, 하청계약자계에서 동의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를 포함하지 않고 수령한 외국 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의 매출일 경우,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은 다음 공식에 따라 결정된다:

$$\begin{array}{l} \text{기업소득세} \\ \text{계산대상} \\ \text{매출액} \end{array} = \frac{\text{기업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출액}}{1 - \text{세 계산대상 매출액에 대한 기업소득세 계산비율}}$$

예시 14:

외국계약자 A 는 시멘트공장 Z 건설을 위한 전체 감리서비스를 베트남측 당사자에게 제공하며, 계약가격은 부가가치세와 기업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285,000 USD 이다. 그 외에, 베트남측 당사자는 외국계약자의 관리직원들을 위해 살림집과 사무실을 마련하였으며, 그 금액은 38,000 USD 이다 (이 역시 부가가치세와 기업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았다). 계약에 따라, 베트남측 당사자는 외국인계약자를 대신해서 기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외국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 결정은 다음과 같다:

세 계산대상 매출액 결정:

$$\begin{array}{l} \text{기업소득세} \\ \text{계산대상 매출액} \end{array} = \frac{285,000 + 38,000}{(1 - 5\%)} = 340,000 \text{ USD}$$

- 외국계약자가 베트남 하청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외국 하청계약자가 공제 및 신고방법에 의해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또는 외국 하청계약자가 베트남측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자계약에 규정된 작업 또는 공정항목, 각 베트남 하청계약자 또는 외국 하청계약자가 계약자계약에 따라 열거된 상응하는 작업 또는 공정항목을 수행하는 리스트의 금액 일부를 감액하기 위하여 혼합방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외국계약자의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에는 베트남 하청계약자 또는 외국 하청계약자가 실행한 작업분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계약자가 계약자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재료 물자, 기계설비, 그리고 외국계약자가 계약자계약에 따라 이행하는 항목, 작업에 속하지 않는 내부소비, 항목에의 지출에 총당하기 위한 물품,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베트남내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물품, 서비스의 금액은 외국계약자의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 결정시 제외되지 않는다.

예시 15:

외국계약자 A 는 베트남측 당사자와 총 계약금액 9 백만 USD (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았다)로 시멘트 공장 Z 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자계약에 따라서, 외국계약자 A 는 베트남 하청계약자 B 에게 1 백만 USD (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았다)로 설치 금액분을 감액 지급 (베트남측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자계약에 규정되어 있다) 하고자 한다; 그 외에, 계약자계약 이행을 위한 시멘트 공장 Z 건설과정에서 외국계약자 A 는 설치 이행을 위해 원재료 물자 (벽돌, 시멘트, 모래 ...)를 구매하고, 기술자들을 위한 자동차, 호텔 임차 등과 같은 각종 물품, 서비스도 구매하며, 사무실 용품, ... , 계약이행을 위한 서비스도 구매한다.

이 경우에 외국계약자 A 의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 = 9 백만 USD - 1 백만 USD = 8 백만 USD

외국계약자 A 의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은 원재료 물자, 물품, 기술자들을 위한 자동차 임차료, 호텔 임차료 등과 같은 서비스, 사무실용품, ..., 구매 지급금은 공제될 수 없다.

- 하청계약자가 고정비율 방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외국 하청계약자일 경우, 외국계약자의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은 베트남측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외국계약자가 수령한 매출액 전체이다. 외국 하청계약자는 외국 하청계약자가 외국계약자와 체결한 하청계약자계약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작업금액 부분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 기계, 설비, 운송수단 임차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은 임차료 금액 전체이다. 기계, 설비, 운송수단의 임차관련 매출액이 임차자측이 외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까지 운송수단 보험, 유지관리, 등록 비용, 운송수단 운전자, 기계 등과 같은 곳에 직접 지불한 비용과, 기계설비 운송비용을 포함하는 경우, 사실을 증명하는 문건증서가 있으면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은 이들 비용 각 지급이 포함되지 않는다.
- 외국항공사의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은 항공사 자체의 비행기 운항 또는 부대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승객, 물품의 운송 및 기타 운송대상에 있어서 베트남내 여행자티켓 발권, 항공화물 운송장 발행 및 기타 수입 (국가와 법률 규정에 따른 조식을 위해 대신 징수한 금액들은 제외한다) 이다.

예시 16:

외국항공사 A 는 2013 년 1 분기 발생 수입액은 100,000 USD 이고, 그 가운데 여행자티켓 발권 수입은 85,000 USD, 항공화물 운송장 판매수입은 10,000 USD, 그리고 MCO (Miscellaneous Charges Order, 부과금 부과) 판매수입 5,000 USD 이다; 동시에, 국가 수입금 (공항 이용료) 1,000 USD, 승객의 티켓반환 환불금이 2,000 USD 이다.

외국항공사 A 의 2013 년 1 분기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 = 100,000 - (1,000 + 2,000) = 97,000 USD

- 외국해운사의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은 여객운송, 물품운송 활동으로부터 얻은 운임 수입과, 기타 부수입 (화물이 중간 기착지항을 통과하면서 환적되어야 하는 경우의 처리비용 모두를 포함한다), 그리고/또는 베트남내 처리항간의 이동에서 얻은 운임수입 전체이다.

기업소득세 계산의 기초 (Base)가 되는 운송운임에는 외국선주에 대하여 베트남내 항에서 기업소득세가 이미 계산된 운임, 그리고 베트남내 항에서부터 중간 기착지항까지 화물운송에 참여한 베트남 해운사업자에게 지불한 운임이 포함되지 않는다.

예시 17:

기업 A 는 외국 해운사 X 의 대리점이다. 해운대리점 계약에 따라, 기업 A 는 해운사 X 를 대신하여 외국항 운송화물을 접수하고, 선하증권을 발행하며, 화물운임, ..., 을 징수한다.

베트남 기업 B 는 (기업 A 를 통해) 해운사 X 를 이용하여 화물을 베트남으로부터 미국으로 운송하며, 운송운임 가액은 100,000 USD 이다.

기업 A 는 베트남 기업의 선박 또는 외국 선박을 임차하여 화물을 베트남으로부터 싱가포르 운송하였으며, 그 운송운임은 20,000 USD 이다. 그리고 나서, 싱가포르에서 미국으로 해운사 X 의 선박편으로 운송될 것이다.

외국 해운사 X 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text{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매출액} = 100,000 - 20,000 = 80,000 \text{ USD}$$

- (송하인이나 수하인 가운데 누가 서비스비용을 지불하는지와 관계없이) 베트남에서 외국으로 가는 국제 포워딩, 창고운송 물류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은 외국계약자가 수령하는 매출액 전체이며, (항공, 해운) 운송사에 지불하여야 할 국제운송 운임은 제외한다.
- (송하인이나 수하인 가운데 누가 서비스비용을 지불하는지와 관계없이) 베트남에서 외국으로 가는 국제 운송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은 외국계약자가 수령한 매출액 전체이다.

예시 18:

외국 기업 A 는 외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 및 그 반대방향으로의 우편소포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 A 의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 (외국 송하인이나 베트남내 수령인 가운데 누가 서비스비용을 지불하는지와는 관계없이) 외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의 운송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기업소득세 납부대상 매출에 속하지 아니한다;
- + (베트남내 송하인이나 외국 수령인 가운데 누가 서비스비용을 지불하는지와는 관계없이) 베트남에서 외국으로의 운송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은 기업 A 가 수령한 매출액 전체이다.
- 재보험과 관련해서는,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외국으로의 재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은 외국계약자가 수령하는 외국 재보험 가입비용 (재보험 커미션과, 합의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 비용을 포함한다) 이다.
  - + 외국으로부터의 재보험 인수 활동과 관련해서는,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은 외국계약자가 수령한 재보험 가입수수료 금액이다.

보험서비스에 대한 조세정책 상세규정은 재무부의 각 안내에 따라 시행된다.

- 증권 양도와 관련해서는,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증권 양도, 채권 (면세대상에 속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예탁증서 등과 관련해서는,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은 양도시점에서의 증권, 채권, 예탁증서의 총매출액이다.

증권활동에 대한 조세정책 상세규정은 재무부의 각 안내에 따라 시행된다

- 이자율스왑거래 (Interest Swap Transaction)에 대한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과 관련해서는, 외국계약자가 1 Calendar Year 기간중에 발생하는 수취이자-지급이자간 차액분이다. Calendar Year 에 따른 세 계산기간 결정은 기업소득세법, 조세관리법 및 각 안내문건의 규정에 따른다.

예시 19:

은행 A (A)는 10 백만 USD 금액을 대출하였고, 이자율은 고정 월 5.2%이다. 계약이행 기간은 2012. 2. 1~2015. 2. 1 으로 3 년이다. 지급기한은 6 개월 1 회이며, 기간 시작일에 지급한다.

A 의 대출계약을 근거로, A 는 외국 은행 B (B)와 이자스왑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협상한다:

+ 계약이행기간은 2012. 2. 1~2015. 2. 1 으로 3 년이고, 지급기한은 6 개월 1 회이며, 기간 시작일에 지급한다.

+ A 가 B 에게 지급해야 할 변동이자율은 Libor + 0.25% 이고, B 는 A 에게 고정금리 5.2%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이자율 Libor + 0.25%가 스왑계약에 따른 고정금리 보다 높으면, B 가 A 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자율 차액을 수령함을 의미한다:  $(Libor + 0.25\%) - 5.2\%$  이자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이자. 반대로, 이자율 Libor + 0.25%가 스왑계약에 따른 고정금리 보다 낮으면, A 가 B 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자율 차액을 수령한다:  $5.2\% - Libor + 0.25\%$  이자율로 계산하여 A 가 지급하는 이자.

지급 시점	Libor 이자율 (%)	A 가 B 에게 지불해야 할 이자율 (%)	B 가 A 에게 지불해 야 할 이자율 (%)	상계 후, A 또는 B 가 수령하는 이자 (%)		A 또는 B 가 각 기에 받는 차액 (1,000 USD)	
				A	B	A	B
1/2/2012- 31/7/2012	4.80	5.05	5.20		0.15	-	15
1/8/2012 - 31/1/2013	5.00	5.25	5.20	0.05		5	
1/2/2013- 31/7/2013	4.90	5.15	5.20		0.05	-	5
1/8/2013 - 31/1/2014	4.95	5.20	5.20	0.00		-	-
1/2/2014 - 31/7/2014	4.90	5.15	5.20		0.05		5
1/8/2014- 30/1/2015	5.05	5.30	5.20	0.10		10	

B 에 대한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Year 2012 (01/01/2012 - 31/12/2012): B 가 A 로부터 수령하는 총금액은 (15,000 - 5,000) = 10,000 USD;

+ Year 2013 (01/01/2013 - 31/12/2013): B 가 A 로부터 수령하는 총금액은 (5,000 - 0) = 5,000 USD;

+ Year 2014 (01/01/2014 - 31/12/2014): B 는 받을 돈이 없으며, A 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5,000 USD (세 계산대상 매출액 = 0);

+ Year 2015: 기초에 지급한다는 동의계약에 따라, A 와 B 사이에 상계 지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파생금융서비스에 대한 조세정책에 관한 상세규정은 재무부의 각 안내에 따라 시행된다.

## 2. 세 계산대상 매출액에 대한 기업소득세 계산비율

### a) 사업분야별 세 계산대상 매출액에 대한 기업소득세 계산비율:

번호	사업분야	세 계산대상 매출액에 대한 기업소득세 계산비율 (%)
1	무역: 베트남에서의 서비스관련 배송, 물품·원료·물자·기계·설비 공급 {현지 수출입형식의 모든 물품공급 (외국 법인, 개인을 위한 물품 임가공일 경우를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DDP, DAT, DAP (국제무역용어 - Incoterms) 물품인도 조건에 따른 물품공급}	1
2	서비스, 기계설비 리스, 보험, 시추선 리스	5
3	식당, 호텔, 카지노 관리서비스	10
4	선박 항공기, 선박 항공기 엔진, 선박 항공기 부품의 리스	2
5	건설공정에 수반되는 원재료, 기계, 설비 계약을 포함하건 아니건, 건설, 설치	2
6	제조, 기타 사업, 운송 (해운운송, 항공운송을 포함한다) 활동	2
7	외국으로의 증권, 재보험 양도, 재보험 가입 수수료	0,1
8	파생금융 서비스	2
9	대출이자	5
10	Copyright 수입	10

### b) 구체적 경우에 있어서의 세 계산대상 매출액에 대한 기업소득세 계산비율은 다음과 같다:

- 서로 다른 많은 사업분야를 포함하는 각 계약자계약, 하청계약자계약과 관련하여, 기업소득세액 결정시 세 계산대상 매출액에 대한 기업소득세 계산비율 적용은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시행하는 각각의 사업활동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매출액에 근거하며, 납세 한다.

각각의 사업활동 금액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사업분야별 기업소득세 계산비율의 적용은 계약금액 전체에 대하여 가장 높은 기업소득세 계산비율로 한다.

원래, 건설사업에 수반되는 원재료 또는 기계, 설비 등 계약을 포함하는 건설, 설치 활동과 관련하여, 세 계산대상 매출액에 대한 기업소득세 계산비율 %는 계약금액 전체에 대한 2%이다. 외국계약자가 여러 하청계약자와 원재료 또는 기계, 설비 계약이 포함되는 작업 또는 공정항목 각 부분금액의 전체를 배분하여 수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계약자는 계약에 따라 남는 서비스금액 분만큼만 수행한다면,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에 대한 기업소득세 계산비율은 서비스 사업분야 (5%)가 적용된다.

예시 20:

외국계약자 A 는 베트남측 당사자와 발전소 X 를 건설하기 위하여 75 백만 USD 금액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으나, 기업소득세는 포함한 것이다)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은 다음을 포함한다:

- + 사업장에 공급되는 기계, 설비 금액: 50 백만 USD.
- + 기술라인 설계, 기타 설계 금액: 5 백만 USD.
- + 공장 건물, 기타 보조시스템 건설, 설치 금액: 15 백만 USD.
- + 감리, 설치 안내 서비스 금액: 3 백만 USD.
- + 기술 교육훈련, 시운전 금액: 2 백만 USD.

이 경우, 75 백만 USD 계약금액 전체에 대한 적용 기업소득세 계산비율은, 외국계약자 A 가 공급하는 각 사업활동에 대하여 분리 계산하지 않는다면, 2%이다.

외국계약자 A 가 원재료 계약을 포함하는 작업 일부분을 재하청 하기 위해 여러 하청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계약자 A 는 서비스 금액 일부 (예를 들면, 감리, 설치 안내 서비스금액과 같이)만 수행하는 경우, 이 서비스금액 부분에 대한 적용 기업소득세 계산비율은 5%이다.

- 설치 안내, 교육훈련, 운영, 시운전 등 각종 서비스를 수반하는 기계설비 공급계약에 있어서, 기계설비 금액과 각 서비스금액을 구분할 수 있다면, 세 계산은 계약금액 각 부분의 각 세 계산비율에 따른다. 기계설비 금액 및 각 서비스 금액을 구분할 수 없는 계약일 경우, 세 계산대상 매출에 대한 기업소득세 적용 계산비율은 2%이다.

예시 21:

외국계약자 A 는 베트남측 당사자와 기계설비 라인 1 개를 70 백만 USD 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은 다음을 포함한다:

- + 사업장에 공급되는 기계, 설비 금액: 60 백만 USD.

+ 기술라인 설계, 기타 설계 금액: 5 백만 USD.

+ 감리, 설치 안내 서비스 금액: 3 백만 USD.

+ 기술 교육훈련, 시운전 금액: 2 백만 USD

이 기계설비 금액과 서비스 금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기업소득세 적용 계산비율은 다음과 같다: 기계, 설비 금액에 대하여는 무역분야에 대한 계산비율을 적용; 설계, 설치 감리, 교육훈련, 시운전 서비스에 대하여는 서비스분야 계산비율 적용.

구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소득세 계산비율 2%를 계약금액 전체 (70 백만 USD)에 적용한다.

#### 제 4 목. 공제방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GTGT) 납부,

#### 매출액 비례 %에 의한 기업소득세 (TNDN) 납부

(이하에서 혼합방법이라 한다)

#### 제 14 조. 적용대상 및 적용조건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가 이 시행규칙 제 2 장 제 2 목 제 8 조에 제기된 조건 (i), (ii)를 만족시키고, 재무부의 회계에 관한 법률 및 안내의 규정에 따라 자율회계를 실시하고 있다면, 공제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계 계산대상 매출에 대하여 세 계산비율 %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겠다는 것을 국세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 15 조. 부가가치세

이 시행규칙 제 2 장 제 2 목 제 9 조의 안내에 따라 이행한다.

#### 제 16 조. 기업소득세

이 시행규칙 제 2 장 제 3 목 제 13 조의 안내에 따라 이행한다.

#### 제 5 목. 세액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규정

#### 제 17 조. 각 경우별 신고 및 납부

1.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가 이 시행규칙 제 2 장에 있는 안내와 같은 3 가지 방법 가운데 1 가지로 납세의무의 이행을 하고 있었다면, 계약 종료시까지 그 시행하고 있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가 이 시행규칙 제 2 장에 있는 안내와 같은 3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 납세의무의 이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舊 계약자계약 또는 하청계약자계약을 아직 종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베트남내에서 新 계약자계약 또는 하청계약자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면, 舊 계약자계약 또는 하청계약자계약의 이행방법에 따라 新 계약자계약, 하청계약자계약에서도 계속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3. 구 계약자계약 또는 하청계약자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신 계약자계약 또는 하청계약자계약을 체결, 이행하는 경우,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는 이 시행규칙 제 2 장에 있는 안내와 같이 3 가지 방법 가운데 1 가지로 신 계약에 대하여 재등록할 수 있다.
4. 외국계약자, 외국하청계약자가 많은 계약을 동시에 이행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조건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계약이 있으면, 그리고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가 공제, 신고 방법 또는 혼합방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등록하였다면, 기타 여러 계약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계약을 모두 포함한다)도 역시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가 이행하겠다고 등록한 방법에 따라 납세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가 부가가치에 직접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유전, 가스전 탐사, 시추, 개발 및 채취 활동 추진을 위한 물품,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베트남측 당사자가 규정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대신 납부할 책임이 있다.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가 유전, 가스전 탐사, 시추, 개발 및 채취 활동 추진을 위한 물품,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공제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가 공제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하기 위한 납세자등록증을 국세기관으로부터 아직 발급받지 못한 동안에, 베트남측 당사자가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베트남측 당사자는 규정된 비율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대신 납부할 책임이 있다.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가 국세기관 발행 납세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는 납세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때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공제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책임이 있다.

베트남측 당사자가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를 대신하여 비율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의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세액에 산입하지 않고, 동시에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는 납세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때 이전에 발생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는다.

#### 예시 22:

2013. 1 월에 외국계약자 A 는 베트남측 당사자와 1 백만 USD 계약금액으로 석유가스 시추서비스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외국계약자 A 는 공제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한 국세기관 발급 납세자등록증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인 가운데, 외국계약자 A 는 계약자계약 이행을 위한 물품, 서비스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였으며, 5,000 USD 이다. 기한도래로, 베트남측 당사자가 외국계약자에게 100,000 USD 의 대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했으며, 기업소득세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을 지급할 경우, 베트남측 당사자는 석유가스 시추서비스에 대한 세 계산대상 매출액의 부가가치 계산비율 70%, 세율 10%로, 그러니까 베트남측 당사자가 외국계약자 A 를 대신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 7,000 USD 만큼 외국계약자 A 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책임이 있다..

2013. 5. 1 일까지 외국계약자 A 는 등록하고 국세기관 발급 납세자등록증을 받아, 외국계약자 A 는 스스로 공제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2013. 5. 15 일 베트남측 당사자는 이어서 외국계약자에게 200,000 USD 를 지급하고, 외국계약자 A 는 베트남측 당사자에게 부가가치세 20,000 USD (200,000 USD x 10%)의 부가가치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며, 매입 부가가치세는 2013. 5. 1~2013. 5. 15 일까지 2,000 USD 이다. 외국계약자 A 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18,000 USD (20,000 USD - 2,000 USD)이다. 외국계약자 A 는 2013. 5. 1 일 시점 이전에 발생한 매입 부가가치세 5,000 USD 가 공제되지 아니한다.

## 제 3 장

### 집행의 조직화

#### 제 18 조. 시행 효력

1. 이 시행규칙은 서명한 날로부터 45 일 후에 시행효력을 가지며,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또는 베트남에서 수익이 있는 외국 법인, 개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납세의무의 이행을 안내하는 재무부의 2008. 12. 31 일자 제 134/2008/TT-BTC 호 시행규칙, 제 134/2008/TT-BTC 호 시행규칙을 보충하는 재무부의 2009. 10. 9 일자 제 197/2009/TT-BTC 호 시행규칙, 제 134/2008/TT-BTC 호 시행규칙을 수정, 보충하는 재무부의 2010. 4. 22 일자 제 64/2010/TT-BTC 호 시행규칙을 대체한다.
2. 이 시행규칙이 효력 있는 날 이전에 체결된 계약, 하청계약의 경우,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의 의무 결정은 계약체결 시점에 상응하는 각 법률규범 문건의 안내에 따라 계속 시행되나, 다음 각 경우는 제외 한다:
  - 2009. 1. 1 일 이전에 효력 있었던 부가가치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과 서비스와 관련하여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에 의해서 공급되고, 2009. 1. 1 일 이후부터 부가가치세 부담대상에 속하면,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에 대한 부가가치 계산대상 매출액의 결정은 이 시행규칙에 있는 안내에 따라 이루어진다.

#### 예시 23:

2008 년에, 베트남 기업 A 는 외국 기업 B 와 시멘트공장 프로젝트에 대한 기계라인, 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총 계약금액은 100 백만 USD 이며, 기계설비 (아직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종류에 속한다) 금액 80 백만 USD, 설치안내, 설치감리, 보증수리, 유지관리 서비스금액은 20 백만 USD 이다.

2009. 1. 1 일 이전에 효력 있는 부가가치세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의 고정자산 형성을 위한, 아직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종류에 속하는 기계설비 라인은 수입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부담대상이 되지 않는다. 2009 년에 기업 A 는 기업 B 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라인에 해당하는 기계설비를 수입하고, 수입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이 경우에, 외국계약자 (기업 B)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대상 매출액은 이 시행규칙 제 2 장 제 1 목 제 6 조에 있는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 2009. 1. 1 일부터 지급이 되는 사업하는 개인인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의 매출수익 금액과 관련해서는 개인소득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득세 (매출세) 의무를 이행한다.
- 재무부의 1998. 12. 22 일자 제 169/1998/TT-BTC 호 시행규칙에 있는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대상에 속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자계약, 하청계약자계약, 또는 대출금 이자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대상에 속하는 대출계약에 있어서, 이것이 이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부담대상으로 속하게 되면, 2012. 3. 1 일부터 이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된다.

- 이 시행규칙의 규정보다 훨씬 더 높은 종전 각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세 계산대상 매출액에 대한 기업소득세 계산비율 %을 적용하고 있는 계약자계약, 하청계약자계약에 대해서는 2012. 3. 1일부터 이 시행규칙에 있는 계산비율을 적용한다.
  - 식당, 호텔, 카지노의 관리서비스 공급계약과 관련, 세 계산대상 매출액에 대한 기업소득세 계산비율은 2012. 3. 1일부터 이 시행규칙에 있는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3.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하는 국제조약에 이 시행규칙의 안내 내용과 서로 다른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의 납세에 관하여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국제조약의 각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적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재무부에 Feedback 해 줄 것을 각 기관과 업체에 요청한다./.

부장을 대신하여 서명

차장

Đỗ Hoàng Anh Tuấn